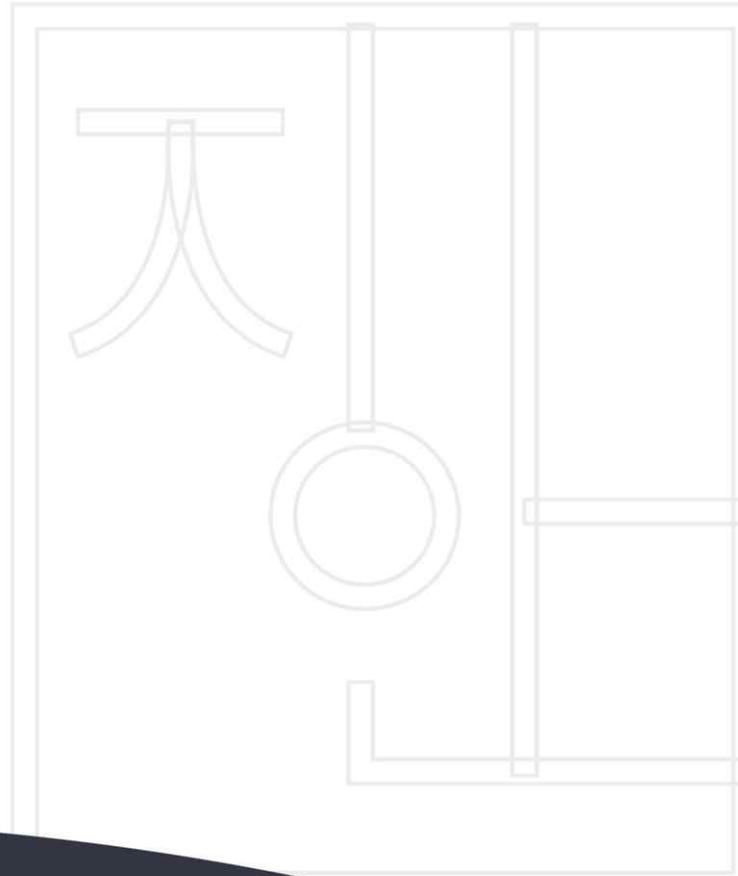




손해사정서

THE CLAIM ADJUSTMENT REPORT



지안손해사정법인

JIAN CLAIM ADJUSTMENT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오성빌딩 304호 T.1833-6051 F.02-6455-6051

◆ 담당 신체손해사정사 정승협[손사 제 BD00001378호] H.P.

수신	: (주)0000	25. 00. 00
참조	: 심사센터	
제목	: 000 님(000000-0000000) 손해사정서 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안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으로 보험업법 제 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의거하여, 손해사정당사자인 000(000000-0000000)님으로부터 청구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을 위임받아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3. 본 손해사정서가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21조의 2 제3항에 따라 손해사정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보험업법 제185조 및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업무 외에 보험금청구의 대리, 대행과 법률사건과 관련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접수부서에서는 보험금 청구서류(보험금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를 피보험자인 000(010-0000-0000)님에게 연락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손해사정사 정 승 협

책임손해사정사 김 현 철

담당손해사정사 정 승 협

지안손해사정법인



JIAN CLAIM ADJUSTMENT



- 목 차 -

I. 산출 근거 및 사정액

- 손해사정 근거
- 손해액 사정금액

II. 수임사항

- 손해사정업무의 수임계약사항

III. 사고 및 손해발생의 조사

IV. 관계법규 및 보상책임의 판단

V. 손해사정 의견

I. 산출 근거 및 사정액

1. 산출근거

- 1) 무)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1010)자가용
- 2) 민법, 상법, 형법 및 특별법 등
- 3) 유사 조정례 및 판례 등

2. 보상액 산출기준 사정액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금	0 원
합계	금	0 원



II. 수임사항

□ 손해사정 업무의 수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 위임인 : 000(주민번호 : 0000000 - 00000000)
- 주 소 :
- 연락처 :
- 보험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 본인
- 보수청구서 발행여부 :

□ 손해사정 업무내용

상기 손해사정업무의 수탁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규정한

-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배상액의 사정 등
- 제1호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제1호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III. 사고 및 손해발생의 조사

□ 기초사실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24년 00월 00일 00:00경
- 사고장소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 사고내용 : 보험대상자는 상기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우회전 하던 중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8세 여아를 충격하며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골과 연골하골절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피보험자의 적용법조는,

-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함) 제5조의13 제2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함) 제3조 제2항에서 나열된 단서6호(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동법 단서11호(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 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호(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위반
- 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서 교특법 제3조가 제외된 사유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특별법 우선 적용 법리 및 형사처벌 면탈 특례에 의한 것일 뿐, 해보험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6,11호로 적용가능하며 해보험에서 규정한 중대법규위반사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판단주체의 적용법조]

판단주체	적용법조
양천경찰서	교특법 제3조 제2호,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횡단보도 통행 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서부지검	특가법 제5조의 13 제2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죄]

IV. 관계법규 및 보상책임의 판단

□ 해보험 약관규정 [무)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1010)자가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 - 69일 진단시	70일 - 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7 제13829호(도로교통법), 2016.12.2] [[시행일 2017.12.3]]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적용 유사판결 사례]

□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이중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07. 4. 12. 선고2006도4322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신호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일 뿐이고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인 범칙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및 피해법의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교통법 제3조 제1항의 위반과 동법 제2항의 위반이 경합된 경우

대법원 2011. 7. 28. 선고2011도3630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사상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피해자 공소의 2, 3으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위 무죄 부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은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여 무죄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한 위 무죄 부분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을 이루는 주의의무 위반의 유형들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한 판단으로 선해하더라도(이렇게 본다면 사망에 이른 피해자 공소의 1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이 누락된 셈이 될 것이다), 피고인의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역시 신호위반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두 개의 특별법이 경합되었을 경우, 하나의 특별법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2023노1673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의 구성요건에 각각 해당한다....중략...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운전자보험에서 면책 단서조항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 8. 8. 선고2012가단32664판결(채무부존재)

: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는 형사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추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부족 등으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만일 원고가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를 작성할 당시 가졌던 의도가 위 (1)항과 같은 취지였다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다만, 추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합니다.“ 등의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었다.”

V. 손해액 사정의견

보험대상자는 '24. 00. 00일(목) 00:0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에 위치한 서울양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형사입건되어 현재 공판 중에 있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특가법조항은 해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분쟁이 야기된 바, 당사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중대법규위반사고 적용의 열거책임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관하여

해보험 약관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구분은 '사망사고', '중대법규위반사고' 및 '일반교통사고'로 나뉘어지며, 해당 사안에서의 '중대법규위반사고'의 범주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8을 제외한 사고를 말합니다. 적용된 특약의 객관적 해석상, 교특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중과실(개정전 기준)중 어느 하나에 속하면 족하고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검찰의 공소여부, '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여부, 약식기소 여부 등과 같이 나열된 기준 외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이 결여되어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제한적 해석이 필요한 동종제한의 원칙도 배제되며, 교특법을 인용하여 열거된 사고의 유형만 판단하면 담보 내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법규위반사고는 공소이유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공소장에 명시된 적용법조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가법 제5조의 13 제2호의 경우 처벌에 대한 기준만 존재할 뿐 특례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공소장에 별도로 교특법을 명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소장은 위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일 뿐이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2004도4693판결 참조)약관에서 규정한 교특법에서 열거된 '어린이보호구역사고', '횡단보도사고'에서 배제된다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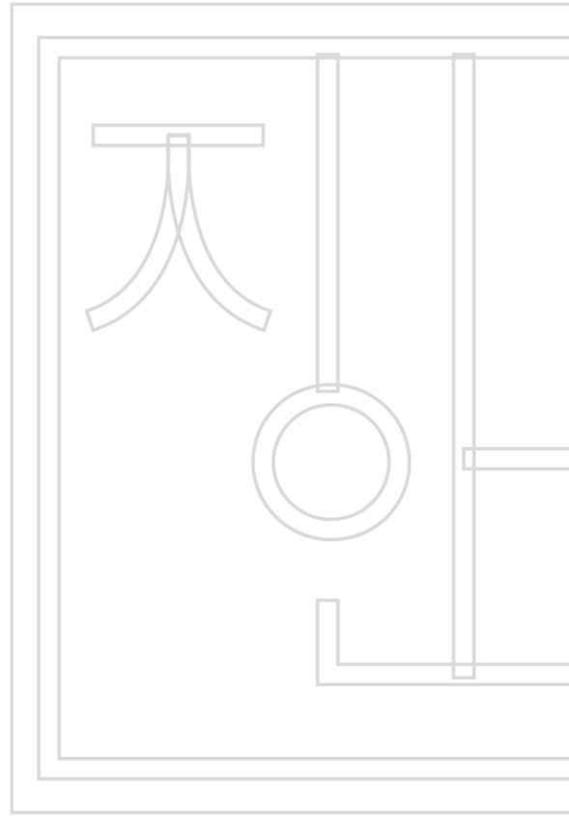
■ 두 개의 특별법이 경합되었을 경우 선법의 공소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교특법은 도로교통법과 연계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한정적 특별법에 해당되어, 교특법과 특가법은 일반법규가 아닌 특별법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특별법이 경합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의 규정이 완화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특별법하에서 각각의 죄를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2023노1673판결). 따라서 금 사고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된다면 선법인 교특법을 주장할 실익이 없고 무죄

로 선고가 된다하여도 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사고, 횡단보도사고의 죄가 배제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중대법규위반사고’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운전자의 행위불법 또는 형사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지급금액에서도 일반교통사고와 구별할 합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적시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도록 하는 보험가입의 목적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해당 담보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관상,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로 한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등의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다의적 해석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은 해당약관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가법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엄연히 중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유로만 한정하여 지급유무를 판단한다면 약관의 해석원칙 중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이익은 충분히 고려되어야하고 쉽게 배척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관련 조정례 및 판례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바, 관련 보험금 지급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안손해사정법인

JIAN CLAIM ADJUSTMENT

